

도시정비분야 서비스 이행기준

1. 품격있는 광고물 문화 실현

- ◆ 일일 순찰강화, 휴무일에 지속적인 정비 및 행정제재로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로 만들겠습니다.
- ◆ 옥외광고물 전수조사, 요건 구비 무허가 간판 양성화를 통하여 불법간판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◆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도시미관 제고와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
- ◆ 광고물에 대한 『허가연장 사전예고제』를 실시하여 3년 기간이 만료되는 광고물 허가자에 대해 허가기간만료 30일 전에 우편안내문을 매월 1회 발송하여 고객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.

2. 조화로운 도시계획의 수립과 개발행위허가

- ◆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어 불합리한 시설은 재정비하여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◆ 도시계획 수립 시 공람·공고 등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고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.
- ◆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는 신청 후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.
- ◆ 도시계획내용,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직접방문, 전화, 서면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3일 이내에 정성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.

3. 하수시설의 확충정비

- ◆ 괴정천, 장림천 등의 하천과 우리구 지역 내 전 하수구에 대하여 준설반 7명을 편성·운영하고 담당별 구역을 지정, 분기1회 이상 점검하여 퇴적된 토사를 적기에 준설하여 우기시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◆ 특히, 노후 파손된 횡단측구 및 측구뚜껑, 불량하수 맨홀, 하수 누수 등 관련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 교체·정비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4. 서비스별 접수·문의창구

서비스명	담당	전화번호	팩스 (FAX)
· 옥외 광고물 허가, 신고 처리 · 불법광고물 정비 · 하수도원인자부담금	광고물관리담당	220-4711~8	220-4719
· 도시관리계획업무 · 도시계획시설사업 · 미집행도시계획시설 · 택지개발사업 ·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	도시계획담당	220-4731~4	220-4719
· 연안정비사업 · 친수공간조성 · 공유수면 관련 업무	도시개발담당	220-4721~4	220-4719
· 하수도정비	하수관리담당	220-4682~6	220-4719

5.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

- ◆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지역·장소(건물벽면, 가로수, 도로표지, 전주 등)에 불법 현수막, 벽보, 불법간판 등을 설치하게 되면 도시 미관 저해 및 시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니, 구민 여러분께서는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간판, 현수막, 벽보 등을 설치하실 때에는 도시미관 및 건물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시고, 반드시 구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옥외광고물 허가, 신고기간은 3년이며, 3년 경과 후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다대포항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 및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하여 불편사항이나 각종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즉시 연락하여 주시고, 각종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미한 불편사항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